

2. 비용에 대한 변경 사항과 절차

- (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(2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(3)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- (4) 변경절차는 계약서(표준약관)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(보호자)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.

3.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따른다.

4.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15%)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같은 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.

5.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(9% 또는 6%)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 (0%) 이다.

6.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..